

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전 실



국무총리 지시 제/8호 (720-2014)

1982. 8. 13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제 목 : 민원제도 개선지침 시달

1. 82.7.13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하신
민원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임

2. 각 부처에서는 위치시에 따라 소관 민원제도 개선에
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.

3. 그동안 각 부처에서는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을
포함하여 민원행정 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에 힘쓴 결과 많은 성과가
있어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기반이 점차 갖추어져 가고 있읍니다.

4.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.
개선해야 할 여지가 여러분 야에 걸쳐 적지않게 있어 보다 적극적인
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읍니다.

5.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장발전 차트요인 개선

작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전 정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각 부처 장관은 이에 배전의 관심을 기울여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민원제도 개선지침 1부. "끌"

卷之三

수신처 : 가 (4, 11-46, 51-53)
나 (1)

민 원 제 도 개 선 치 침

1. 기본 목표

- 번잡한 민원제도로 인한 국민에너지 낭비와 인을 과감히 제거하고
- 각종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과로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
-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과 정부간의 불신제거로 신뢰를 중대함으로써 개혁의지의 실현과 국력의 보호에 기여한다.

2. 실천 방향

- 가. 각종 민원절차를 단순화하고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며,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, 복합민원은 주민원을 중심으로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강구, 추진함으로써 민원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.
- 나.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인·허가 제도의 통·폐합을 과감히 추진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한다.
- 다. 민원 처리권한을 과감히 하부 기관에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감수 등록 업무 등의 민간단체 위탁을 확대한다.

3. 실천계획

가. 기본방침

- 각 부처 장관 주관하에 소관 민원 개선을 책임 추진한다.
- 여러부처에 관련된 민원 및 제도는 주민원 소관부처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개선 조치한다.
- 개선성과는 부처별로 대통령각하께 분기별로 직접 보고 한다.
- 이해여부의 수시확인, 감사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.
-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은 현행대로 추진한다.

나. 개선대상의 발굴, 선정

- 각 원·부·처·청의 장의 책임하에 개선대상을 철저히 조사
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개선계획을 10개내외 선정하여
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.

1) 대상

- 정부 기관은 물론 산하기관, 단체, 협회등의 대민업무
- 대민관계 법령, 고시, 예규, 내규, 제도 및 관행

2) 개선계획 작성, 제출

- 개선대상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되
- 개선계획에는 과제명, 현황, 근거법령, 개선방향 및
추진일정을 포함한다.
- 개선계획은 언말기준으로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에
제출한다.

- 총무처는 각 부처의 개선대상에서 누락된 사항을 조사, 발굴하여 소관부처의 개선계획에 반영도록 조치한다.

다. 개선조치 및 협의

- 선정된 개선대상 민원 및 제도는 주관부처 장관 책임하에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하고,
-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이 국익 어려운 개선사항은 주관부처에서 총무처에 제출한다.

라. 조정

- 총무처는 주관부처에서 협의조정하지 못한 민원 및 제도의 개선안을 작성하여 "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위원회"에 상정하고
- "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위원회"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, 개선조치 방향을 신속히 판정, 결정한다.

마. 보고

- 각 부처는 민원 및 제도 개선실적을 과제별로 개선전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분기별로 대동령각화제 쪽지 보고한다.

바. 추진상황 제출

- 각 부처는 개선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.

사. 사후 관리

- 각 부처는 개선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한 수시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고,
- 개선에 따른 부작용 양지를 위한 신속, 적절한 보완조치를 강구하여
- 개선사항에 관한 후속조치의 신속한 시행 및 관제공무원에 대한 교육, 대민옹호·안내등을 실시한다.

아.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 추진

-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중 미진한 사항은 다음 요령에 따라 더욱 촉진한다.
 - 개선안은 82.9월말까지 확정하고 관제법령은 82.12월 말까지 개정 조치한다.
 - 고질적인 개선 대상은 추적 조사하여 개선 조치한다.

4. 행정조치

가. 개선계획 작성, 제출

- 각 부처는 82년도 자체 민원업무 개선계획(안)을 법적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82.9.10까지 국무총리실에 제출 한다.

나. 추진실적 보고 및 추진상황 제출

○ 각 부처의 대통령과 함께 대한 세부보고 지침 및
국무총리께 대한 추진상황의 제출 양식, 시기 등은
추후 시달한다.

다. 각 부처는 산하기관, 단체 및 협회등의 소관 민원업무로
개선체계를 본 지침에 준하여 확립 추진한다.

민원 제도 개선 계획

부

우선순위	과제명	현황 및 문제점	근거법령	개선방향	추진일정	비고

* 8월까지 예상으로 조사한 결과